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15.(화) 06:00 < 10.15.(화) 석간 > 배포 2024. 10. 14.(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 의견 수렴

-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 및 조사신청서 기업에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장관 안덕근)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화)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3.12월~'24.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①관세법 : 우회덤핑방지관세 부과 근거, ②시행령 : 우회덤핑 유형·조사신청·조사절차(직권조사 규정 신설, 기존 원심 대비 조사기간 최대 4개월 단축), ③시행규칙 : 우회덤핑 판정 고려요소 등

이번 회의에서는 ❶'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❷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❸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❹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년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이배화 (044-203-587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 개요

□ 개최 배경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에 따라 고시 개정 및 신청서 초안에 대해 기업·대리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행사 개요

○ 일시(안) : '24.10.15.(화) 10:30~12:00

○ 장소 : 서울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서울 삼성동)

○ 참석자 : 60여 명

-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 양병내 상임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등 무역위 관계자
-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도레이첨단소재, 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등 기업, 업종별 단체
- (로펌) 법무법인 세종,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광장 등

□ 행사순서

시 간	진행내용	비 고
10:30~10:35 ('05)	모두발언	이재형 위원장
10:35~10:50 ('15)	발표1 : 우회덤핑 방지제도 고시 내용 설명	이원희 덤핑조사과장
10:50~11:05 ('15)	발표2 : 우회덤핑 신청서 초안 발표	법무법인 세종
11:05~12:00 ('55)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참고2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

